제158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

▢ **일시·장소:** ’26. 10. 21.(수) 14:00 ~ 15:00 /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

┌ 이희정·지은석 위원 불참

○ 해양경찰위원회 : 김재봉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4명

○ 해 양 경 찰 청 : 기획조정관, 인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등 5명

▢ **개최 결과: 심의·의결 2건(수정의결 2), 보고 1건**

【심의·의결 2건】

연번	형식	안 건 명	주 요 내 용	심의 결과	부서
1	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승진임용 **제한사유 명확화** 및 승진임용 시 **결격·당연퇴직사유**(마약류 관련 등) **확인 근거 마련** • **해양경찰위성센터**(정원 12명) 소속 경찰관은 **청장 임용** 및 **승진명부 작성·승진심사는 본청 소속으로 처리** • **교육원·정비창**은 **본청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심사** •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연계 **6개월 이상**인 경우 **결원보충 허용** 수정사항 **위성센터** 인사 특례 관련 **본청 위원회 승진심사 범위**를 경위에서 **경감으로 수정** 등	수정 의결	인사
2	부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포상 가점 기준**(별표 6)**의 검찰기관 명칭 변경** *검찰청 폐지 • **시보임용 경찰관** 중징계 등 사유 시 **신속히 배제**할 수 있도록 **수시 임용심사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 수정사항 중의적 해석 예방을 위한 자구 수정 (소속 경감 → 그 기관에 소속된 경감)	수정 의결	

【보고 1건】

연번	안 건 명	부서
1	’26년 3/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	위원회

첨부1 **수정의결 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4조의2(해양경찰위성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례) ①·②(생 략) ③ **제6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위성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의2(해양경찰위성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례)** ①·②(개정안과 같음) ③ **제63조**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위성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수정사유 제63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경찰위성센터는 그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의 기준을 '제63조제2항 단서'로 한정하지 않고 '제63조'로 정비하는 것이 적합함. 또한, 제3항의 승진심사 관할은 '경위 이하'로만 정하고 있어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승진심사 관할이 불명확하므로, 승진심사 범위를 '경감 이하'로 수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상 정 안	수 정 의 결
제2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26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생 략) ② ---------- **그 기관에 소속된 경감** ---------- ----------
수정사유 중의적 해석을 예방하고 명확한 규정을 위한 자구 수정	

첨부2 주요 의견 (정기회의)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장기휴직**에 따라 **결원보충**이 이루어진 경우, 휴직자의 **원직 복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결원보충에 따른 **복직 부담**이 **장기 육아휴직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 함정·파출소 등 상대적으로 **인력 규모 큰 현장부서의 경우 기존 소속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사무실의 경우** 장기휴직 시 후임자를 충원하므로 **복직 시 개인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상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활용도 상당한 수준**이며,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조직 내 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소규모 소속기관의 **승진심사를 본청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승진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단순히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매년 승진 인원을 배정하지 않으면 특정 기관이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됨.

– 소규모 기관이라고 승진 인원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청과 통합하여 적절한 비율로 승진심사를 운영**하고 있음. 향후에도 소규모 기관 직원의 **승진 기회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유의**하겠음.

- 실제 승진 실적을 보면 **일정 수준의 승진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통계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림.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일반직 공무원은 법령상 시보임용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실제로는 기간을 단축하여 정규임용하는 경우가 있음. **해양경찰의 시보기간(1년)**이 교육훈련 기간을 포함하는 것인지, **교육훈련 종료 후 별도로 적용되는 것인지?** 추가로 시보임용 기간을 **실제로 1년간 모두 운영하는지?**

- **교육훈련을 마친 후 경찰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되며, **시보임용 이후 1년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자질과 적격성을 평가**하고 **정규임용 여부를 심사**함.

○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하는 직원도 있는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가능성**은? 추가로 장기휴직에 따른 결원보충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해 **사전 인력 수요예측이 필요**해보임.

- 육아휴직을 **3년 모두 사용하는 직원도 있으며**, 승진관련 불이익이 없도록 **육아휴직 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 '26년 채용은 예상 결원 대비 약 120%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예상 결원을 고려해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